

제 2 부

부문별 성과와 전망

- 제1장 기획감사실 소관
- 제2장 총무국 소관
- 제3장 복지환경국 소관
- 제4장 안전도시국 소관
- 제5장 보건소 소관
- 제6장 도서관 소관
- 제7장 행정복지센터 소관
- 제8장 수영구의회 소관





제1장

기획감사실 소관

제 1 장 기획감사실 소관

제 1 절 기획감사행정

1. 기획관리

가.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은 우리구가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뚜렷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시책이나 세부사업 등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한다.

2017년에는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수영」의 구정목표를 위하여 “구민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 수영 ”을 구정방향으로 삼고 각 부서에서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5대 핵심전략인 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수영’, 행복한 미래가 있는 ‘복지수영’, 문화가 가득하고 매력이 있는 ‘관광수영’, 사람과 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가 있는 수영’, 열린 구정을 실현하는 ‘소통의 수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렸다.

나. 공약사항 관리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구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7개 분야 41개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 185,444백만원이며 예산사업은 38개 사업, 비예산사업은 3개 사업이다. 관리지침 마련 및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연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평가 결과 총 41개 사업 중 완료 30건, 정상추진 9건, 기반조성 2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향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 대비 달성율은 89.5%로 나타났다.

민선6기 공약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선 제6기 공약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 분야 | 사업명 | 추진시기 | 사업비 | 추진율 | 해당부서 |
|------------------|--------------------------------------|-----------|--------|------|--------------|
| 안전 도시 (5) | 1-1. 광안리일원 침수예방 저류시설 설치 | 2014~2016 | 19,600 | 100% | 건설과 |
| | 1-2. 재난 등 안전용 CCTV 카메라 보강 | 2014~2018 | 2,245 | 100% | 안전관리과 |
| | 1-3. CCTV 지능형 관제 서비스 구축 | 2014~2017 | 6,252 | 100% | 안전관리과 |
| | 1-4. 하수암거 개수 재해예방 사업 | 2014~2018 | 7,766 | 100% | 건설과 |
| | 1-5. 수영동 일원 침수예방을 위한 우·하수 인입관로 설치 | 2015~2016 | 700 | 100% | 건설과 |
| 보건 복지 (11) | 2-1. 건강도시 마스트플랜 수립 추진 | 2014 | 비예산 | 100% | 보건소 |
| | 2-2. WHO 건강도시 가입 및 건강도시 선포 | 2014~2018 | 34 | 100% | 보건소 |
| | 2-3. 공립어린이집 확충 | 2015~2017 | 220 | 80% | 복지서비스과 |
| | 2-4.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 | 2015 | 20 | 100% | 복지서비스과 |
| | 2-5. 전세경로당 매입 및 경로당 확충 | 2014~2018 | 3,250 | 100% | 복지서비스과 |
| | 2-6. 수영구 노인회관 개설 | 2014~2015 | 260 | 100% | 복지서비스과 |
| | 2-7. 어르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 2015~2018 | 150 | 100% | 총무과 |
| | 2-8. 노인건강 스포츠 페스티벌 대회 개최 | 2015~2018 | 80 | 100% | 복지서비스과 |
| | 2-9.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확대설치 | 2015 | 6 | 100% | 복지서비스과 |
| | 2-10. 드림스타트 사업장 증설 추진 | 2015 | 60 | 100% | 복지서비스과 |
| | 2-11. 수영구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2015~2018 | 6,723 | 75% | 복지서비스과 |
| 문화 관광 (8) | 3-1. 수영강·사적공원·백산등과 연계한 이야기길 조성 | 2014~2018 | 10,320 | 65% | 기획감사실 건축과 |
| | 3-2. 부산연극 거점지역 육성 | 2015~2018 | 310 | 80% | 문화공보과 |
| | 3-3. 좌수영 성지 복원(남문, 성터 둘레길 등) | 2014~2018 | 6,208 | 85% | 문화공보과 |
| | 3-4. 남천마리나 시설확충 기반조성 기본계획 반영 | 2014~2018 | 45,100 | 70% | 문화공보과 |
| | 3-5. 수영구 스토리텔링 사업 발굴 | 2014~2015 | 16 | 100% | 문화공보과 |

| 분야 | 사업명 | 추진시기 | 사업비 | 추진율 | 해당부서 |
|-----------------------------|--|-----------|---------------|------|--------|
| 문화 관광 (8) | 3-6. 수영문화센터 재건축 사업(리모델링) | 2015~2017 | 4,286 | 100% | 문화공보과 |
| | 3-7. 해상유람선 및 야경유람선 유치 | 2014~2018 | 4,100 (민자) | 70% | 문화공보과 |
| | 3-8. 수영강변 미술조각 비엔날레 유치 | 2014~2016 | 비예산 | 100% | 문화공보과 |
| 지역 경제 (4) | 4-1. 문화관광형 전통시장(팔도시장)특성화 육성 | 2015~2016 | 1,560 | 100% | 지역경제과 |
| | 4-2. 망미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 2014~2015 | 2,000 | 100% | 지역경제과 |
| | 4-3.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장 활성화 - 중소규모 8개시장 중심 | 2015~2018 | 3,940 | 100% | 지역경제과 |
| | 4-4. 마을어장 신규 개발 추진 | 2014~2015 | 9.5 | 100% | 지역경제과 |
| 공원 녹지 환경 교통 (5) | 5-1. 민락희춘일원 해수집수정 일제정비 및 청정해수 공급 | 2018~ | 500 | 15% | 건설과 |
| | 5-2. 백산 허리길 도로확장 | 2015~2018 | 10,000 | 50% | 건설과 |
| | 5-3. 동별 소규모 주차장 조성 | 2014~2018 | 9,760 | 100% | 교통행정과 |
| | 5-4. 망미고가교 교각디자인 사업 | 2014 | 120 | 100% | 건축과 |
| | 5-5. 수영강변 전망데크 설치 및 단절 자전거도로 연결 | 2014 | 1,000 | 100% | 건설과 |
| 교육 (4) | 6-1. 평생학습관 등 복합건물 건립 기금조성 | 2014~2017 | 2,851 | 100% | 재무과 |
| | 6-2. 구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개설 | 2015~2018 | 200 | 100% | 총무과 |
| | 6-3. 도서관 추가개설(민락동) 및 작은도서관 신설운영 | 2015~2018 | 3,940 | 70% | 문화공보과 |
| | 6-4. 취약계층 교육(취업)지원센터 운영 | 2014~2018 | 250 | 100% | 복지서비스과 |
| 도시 개발 (4) | 7-1. 종합문화체육타운 유치 | 2015~ | 21,442 | 100% | 총무과 |
| | 7-2. 민락매립지 서측해변 수변공원 조성 - 친수공원화사업 | 2014~2018 | 17,000 | 10% | 건설과 |
| | 7-3.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행정지원 활성화 (재개발·재건축·주거용지 확충 등) | 2014~2018 | 비예산 | 100% | 건축과 |
| | 7-4. 학교주변 범죄예방 대책 추진 | 2014~2016 | 205 | 100% | 안전관리과 |

다. 성과관리 평가 시행계획 및 종합평가

성과관리 평가 시행계획은 매년 연초에 수립된 「수영구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역점시책을 구체화하여 실·과·사업소의 담당 단위별로 중요도가 높은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선정·작성하며, 성과예산과 연계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17년에는 성과목표 21개, 관리과제 73개, 성과지표 199개를 선정하였으며,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 시행계획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성과관리 평가 시행계획 현황

| 부서별 | 구 분 | 성과관리 계획 | | | |
|---------------|-----|---------|------|------|-----|
|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비 고 |
| 계 | | 21 | 73 | 199 | |
| 기 획 감 사 실 | | 1 | 4 | 6 | |
| 총 무 과 | 5 | | 7 | 18 | |
| 문 화 공 보 과 | | | 4 | 17 | |
| 재 무 과 | | | 4 | 7 | |
| 세 무 과 | | | 2 | 9 | |
| 민 원 여 권 과 | | | 3 | 6 | |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5 | | 5 | 13 | |
| 복 지 서 비 스 과 | | | 7 | 15 | |
| 청 소 행 정 과 | | | 4 | 6 | |
| 환 경 위 생 과 | | | 5 | 12 | |
| 지 역 경 제 과 | | | 6 | 17 | |
| 교 통 행 정 과 | 6 | | 1 | 10 | |
| 안 전 과 리 과 | | | 3 | 8 | |
| 건 축 과 | | | 5 | 13 | |
| 건 설 과 | | | 3 | 11 | |
| 토 지 정 보 과 | | | 3 | 8 | |
| 도 시 관 리 과 | | | 3 | 10 | |
| 보 건 소 | 3 | 3 | 9 | | |
| 도 서 관 | 1 | 1 | 4 | | |

2017년도 성과관리 평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1차 평가 후 평가부서의 실적확인 및 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성과관리 종합평가 결과

| 구 분 | 총건수 | 탁 월 | 우 수 | 보 통 | 노 력 | 부 진 | 계획취소 |
|-------|-----|-----|-----|-----|-----|-----|------|
| 성과지표수 | 199 | 25 | 137 | 26 | 11 | 0 | 0 |

2017년은 성과관리 체계전환 5년차로 업무평가위원회 배점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계획한 사업 목표를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 설정 및 성과 지표 발굴에 있어 다소 아쉬움도 있다.

2017년도의 자체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는 성과관리 평가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여 보다 나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규정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라. 규정조정위원회 운영

구정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하여 규정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총 4회 개최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건]

| 개 회 수 | 안 건 심 의 | | | | |
|-------|---------|------|------|-----|-----|
| | 계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보 류 | 부 결 |
| 4 | 5 | 4 | 1 | - | - |

안 건 유 형

[단위: 건]

| 구 분 | 시책·제도 및 제안·개선심의 | 국·공유 재산관리 | 공공요금 조 정 | 구 상 권 행사여부 |
|-----|-----------------|-----------|----------|------------|
| 계 | 5 | - | - | - |

마. 지시사항 관리

각종 회의, 보고, 순시 등에서 지시한 사항을 각 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 區 산하 전 직원이 시책방향을 정확히 숙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7년도 정·부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시사항 처리결과

[단위: 건]

| 지시사항 (계) | 훈 시 | 보 고 | 지 시 | 기 타 |
|----------|-----|-----|-----|-----|
| 83 | 73 | 7 | 3 | - |

바. 정책실명제 운영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단위: 건]

| 대상사업 (계) | 주요 구정 현안사항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한 정책 |
|----------|------------|---------------|-----------------|------------------|------------------|
| 26 | 15 | 5 | 0 | 4 | 2 |

사. 스마트 실시간 설문조사

정책의 계획, 결정, 집행, 평가 등 모든 행정업무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하기 위하여 스마트 실시간 설문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스마트실시간 설문 조사는 키오스크, 태블릿PC, NFC태그, QR코드등 주민의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정책의견을 접수하여 개선해나갔다.

아. 수영구정 20년사 발간 추진

1995년 3월 1일 수영구청 개청 이후 20년간의 변화된 모습과 역사, 그리고 그동안 이룩한 구정 전반의 성과를 총정리하는 “수영구정 20년사”를 발간코자 2016년 2월 23일 구정 20년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술 용역을 추진하였다.

수영구정 20년사의 추진 방향은 수영구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편집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20년간 발간한 간행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료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구 연혁, 각종통계, 일반행정 등 구정 전반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우리 구의 변화된 어제와 오늘의 모습과 자료를 사진으로 수집·총망라하여 기술하였다.

수영구정 20년사의 목차는 먼저 여는 장, 제1장 자연환경, 제2장 역사, 제3장 정치, 제4장 자치행정, 제5장 지역경제와 환경, 제6장 도시개발과 교통, 제7장 사회복지, 제8장 공원과 녹지, 제9장 교육과 관광, 제10장 문화 유산과 명승지, 제11장 종교와 민속, 제12장 성씨와 인물과 부록으로 수영의 발자취(사진으로 보는 수영, 역대 구청장 등)로 구성되어 2017년 상반기에 500부를 발간하였다.

자. 제2회 부산정책박람회 참가

시민의 정책 공감도 제고, 현장소통강화, 시정·구정 다복동 정책을 소개하는 제2회 부산정책박람회 부스 운영에 우리 구는 다복동 사업을 주제로 참여하여 특색 있는 다복동 사업(12가지)을 소개하고 민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광안1,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등 우리구만의 5가지 특색 있는 다복동 시책과 함께 부스를 구성하는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체에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1위”라는 수영구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다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구는 마주잡은 손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드는 손길, 꽃길 다복동이라는 주제로 다복동 영상물 상영과 부서별로 제작한 각종 다복동 관련 시책 물품 등을 참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우리구의 다양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다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시책을 담은 홍보용 메모지와 수영구 생활 문화센터에 실제 있는 프로포즈 존을 다복동 꽃길 포토존으로 우리 구 정책박람회 부스에 그대로 실사 스크린으로 부착하여 홍보함으로써 실용성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포토존에 참여하여 잠시나마 웃고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며, 타구 벤치마킹 방문 및 즉석사진 필름이 동이 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끄는 등 박람회 행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차. 상급기관 평가 실적

2017년 수영구는 중앙부처와 부산시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72개 부문에서 수상(선정)되어 11억 7천여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먼저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9개 분야 27개 시책(196개 세부지표)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2015년 우수, 2016년 최우수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운영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서는 2015년 특별상, 2016년 장관상에 이어 올해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수상을 하였다.

또한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 TV가 주최하여 민선6기 조례발의 및 공약이행 등 정량지표와 홈페이지 조사,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정성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수영구가 6년 이상 주민만족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7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사)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에서 주관하는 부산광역시 단체장 여성정책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는 수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구·군 자체감사활동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장려를 받고, 2017년 민선6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구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수영구의 노력이 빛난 한해였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실행결과 평가에서 2016년 대상에 이어 올해 우수를 받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등 구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는 크게 향상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및 세계대회 2년 연속 수상, 문화관광축제평가에서 유망축제에 선정되는 등 관광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옥외광고물 종합평가, 도시계획 업무추진 평가 각각 최우수, 부산도시재생박람회 도시재생 구상사업 공모에서 우수를 수상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골고루 수상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수영구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카. 열린(정부)혁신 추진

2017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열린(정부)혁신은 주민이 만족하는 개방된 열린혁신 도시 수영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참여, 열린 조직개편, 기관간 공유체 계구축, 민관 협업 정책 발굴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열린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열린혁신TF팀을 구축하였으며 구청 및 각동에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이 열린혁신정책에 반영되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영동마을공동체구청, 똑딱이봉사단 등 시민참여 과제 11건을 발굴하였고 열린조직개편을 위해 7대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5건의 기관공유정책과 15건의 민관협력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그 결과 2017년 행정안전부 열린혁신평가에서 수영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빵천동 등 주요사업이 주민과 함께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사회적가치구현, 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사업, 칸막이없는 정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일하는 방식 혁신, 국민디자인단 운영, 공공자원 개방공유 등 열린혁신 추진을 위한 각 단위 정책에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여 타지자체에 전파하였다.

2018년 정부혁신은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가치 중심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2. 예산운영

가. 2017년 예산편성

(1) 예산 총괄

2017년도 우리 구 최종예산규모는 총 278,306백만원(일반회계 271,158백만원, 특별회계 7,148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77,024백만원 대비 1,282백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주택가격상승과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도 예산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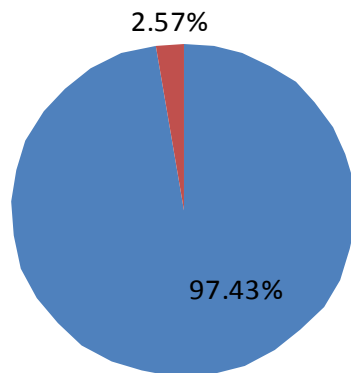
2017년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도 최종예산 | 2016년도 최종예산 | 증 감 | 비 율(%) |
|---------|----------------|----------------|--------|--------|
| 계 | 278,306 | 277,024 | 1,282 | 0.46 |
| 일 반 회 계 | 271,158 | 268,866 | 2,292 | 0.85 |
| 특 별 회 계 | 7,148 | 8,158 | △1,010 | △12.3 |

2017년도 예산규모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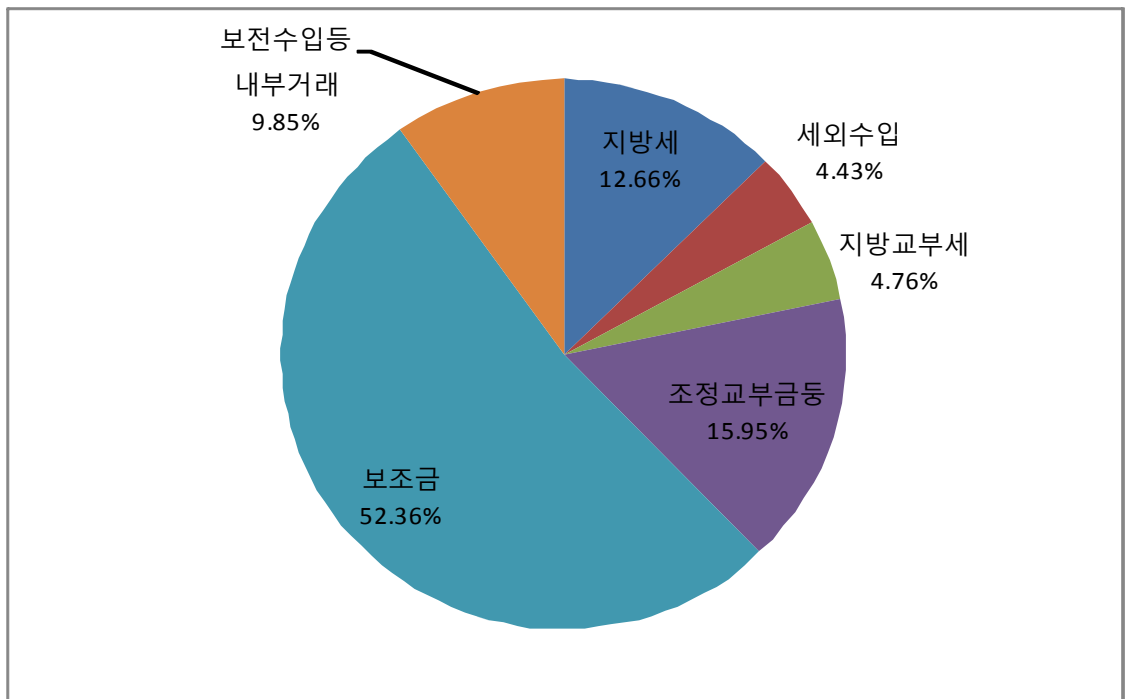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71,158백만원으로 전년도의 최종세입 268,866백만원에 비해 0.85% 증가했다. 이 중 자주재원이 46,326백만원(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재정자립도가 17.08%로 전년도 최종예산 기준 15.72%보다 1.36% 증가하였다.

의존수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224,83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 교부금액은 감소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도 최종예산 | | 2016년도 최종예산 | 증 감 | 비 율(%) |
|------------|-------------|--------|----------------|--------|--------|
| | 예산액 | 구성비(%) | | | |
| 계 | 271,158 | 100% | 268,866 | 2,292 | 0.85% |
| 지방세 | 34,322 | 12.66% | 31,680 | 2,642 | 8.34% |
| 세외수입 | 12,004 | 4.43% | 10,594 | 1,410 | 13.31% |
| 경상적수입 | 9,026 | 3.33% | 7,770 | 1,256 | 16.16% |
| 임시적수입 | 2,978 | 1.10% | 2,824 | 154 | 5.45% |
| 지방교부세 | 12,901 | 4.76% | 13,476 | △575 | △4.27% |
| 조정교부금등 | 43,242 | 15.95% | 43,065 | 177 | 0.41% |
| 보조금 | 141,990 | 52.36% | 145,811 | △3,820 | △2.62% |
| 국고보조금 | 94,114 | 34.71% | 93,936 | 178 | 0.19% |
| 시비보조금 | 47,876 | 17.66% | 51,875 | △3,998 | △7.71% |
| 지방채 | - | - | -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6,698 | 9.85% | 24,240 | 2,458 | 1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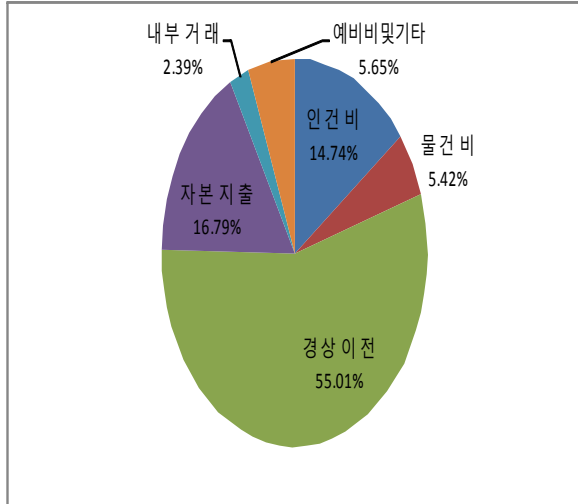
(나) 세출예산

2017년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도 최종 | |
|-------------|-----------|--------|
| | 예산액 | 구성비(%) |
| 계 | 271,158 | 100% |
| 인 건 비 | 39,959 | 14.74% |
| 물 건 비 | 14,691 | 5.42% |
| 경 상 이 전 | 149,184 | 55.02% |
| 자 본 지 출 | 45,525 | 16.79% |
| 내 부 거 래 | 6,478 | 2.39% |
| 예 비 비 맞 기 타 | 15,321 | 5.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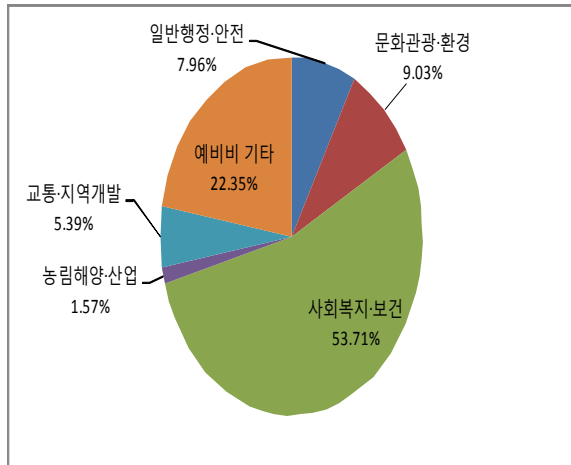


2017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도 최종 | |
|---------|-----------|--------|
| | 예산액 | 구성비(%) |
| 계 | 271,158 | 100% |
| 일반행정·안전 | 21,581 | 7.96% |
| 문화관광·환경 | 24,471 | 9.03% |
| 사회복지·보건 | 145,627 | 53.71% |
| 농림해양·산업 | 4,251 | 1.57% |
| 교통·지역개발 | 14,640 | 5.39% |
| 예비비기타 | 60,588 | 22.35% |



(3)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전년도 5종류에서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4종류로 변경되었으며

2017년도 특별회계총규모는 7,148백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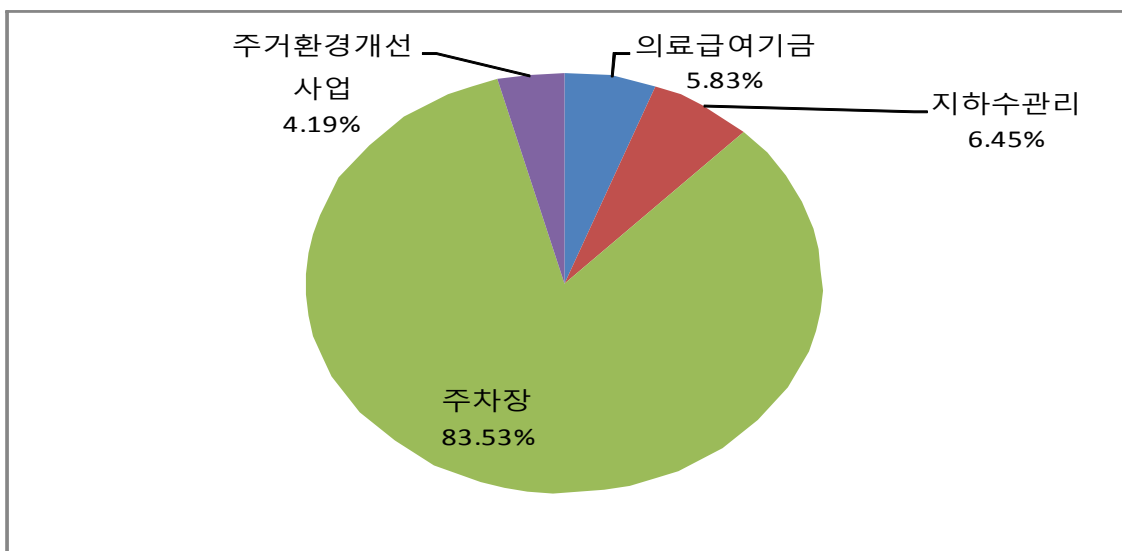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7백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6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970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00백만원이다.

세입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271백만원(17.78%), 임시적 세외수입이 2,187백만원(30.59%), 국·시비 보조금이 444백만원(6.22%)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246백만원(45.41%)이고, 세출분야는 환경보호 461백만원(6.45%), 사회복지 337백만원(4.71%), 수송 및 교통 5,392백만원(75.43%), 국토 및 지역개발 300백만원(4.19%), 기타 658백만원(9.2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도 최종예산 | | 2016년도 최종예산 | 증 감 | 비율(%) |
|-----------------|-------------|--------|-------------|--------|---------|
| | 예산액 | 구성비(%) | | | |
| 계 | 7,148 | 100% | 8,158 | △1,010 | △12.38% |
| 의 료 급 여 기 금 | 417 | 5.83% | 437 | △20 | △4.58% |
|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 - | - | 1,176 | - | |
| 지 하 수 관 리 | 461 | 6.45% | 415 | 46 | △11.08% |
| 주 차 장 | 5,970 | 83.53% | 5,825 | 145 | 2.49% |
|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 300 | 4.19% | 305 | △5 | △1.64% |



나.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합리적인 자원조달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말한다.

(2) 계획수립의 필요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 반영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며, 구정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 정책변화와 재정여건을 반영함으로써 구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3) 재정운용 여건

우리 구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외형적으로 연평균 8%대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부터 예산규모가 2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노력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 사회복지·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의 일자리 지원 및 다양한 복지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대는 세입에서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증가를 가져오고 구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재정의 자율권 저하와 만성적인 재원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세원 발굴,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등으로 자주재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재정운용 방향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수영」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목표로 다양한 세입확충 노력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 운영, 기본경비 최소화, 수혜적 경비를 억제하며 현안사업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 투자 심사 내실화로 계획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 분야별 투자계획(2018년~2022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단위: 백만원, %]

| 분 야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연평균 증가율 |
|---------|---------|---------|---------|---------|---------|---------|
| 계 | 300,241 | 304,450 | 312,502 | 322,559 | 329,131 | 2.3 |
| 일반공공행정 | 30,490 | 31,862 | 38,551 | 45,067 | 41,081 | 7.7 |
| 공공질서및안전 | 5,932 | 23,574 | 4,510 | 4,818 | 5,155 | △3.5 |
| 교육 | 818 | 823 | 864 | 891 | 916 | 2.9 |
| 문화및관광 | 18,855 | 16,156 | 9,703 | 5,811 | 6,041 | △24.8 |
| 환경보호 | 12,082 | 11,860 | 11,917 | 12,315 | 12,154 | 0.1 |
| 사회복지 | 147,985 | 140,679 | 156,606 | 161,476 | 171,152 | 3.7 |
| 보건 | 7,367 | 7,129 | 8,611 | 9,191 | 9,832 | 7.5 |
| 농림해양수산 | 1,905 | 1,922 | 2,506 | 2,574 | 2,632 | 8.4 |
| 산업·중소기업 | 387 | 1,093 | 1,726 | 2,237 | 1,928 | 49.4 |
| 수송및교통 | 15,349 | 11,957 | 14,685 | 13,172 | 13,356 | △3.4 |
| 국토및지역개발 | 4,753 | 3,194 | 3,815 | 3,834 | 3,753 | △5.7 |
| 예비비 | 1,312 | 852 | 2,630 | 2,670 | 2,760 | 20.4 |
| 기타 | 53,006 | 53,349 | 56,378 | 58,503 | 58,372 | 2.4 |

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1) 주민참여예산의 목적 및 범위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으로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참여 경로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로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해당연도의 예산에 한정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된다.

(2)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결과

2017년 7월까지 주민제안사업 40건을 접수하여 부서검토 결과 추진 중 및 완료 10건, 중장기 검토 및 조건부 추진사업 7건을 제외한 23건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 10건이 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되었다.

[2018년 예산 반영 사업 ▷ 10건, 772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액 (백만원) | 비고 |
|--------|------------------------------|--------------|---------------------|
| 계 | 10건 | 772 | |
| 문화공보과 | 광안역 내부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 | 市설치 |
| 문화공보과 | 낭만과 사랑의 광안리 프리포즈존 설치 | 90 | |
| 복지서비스과 | 망미정 경로당 시설보수 및 개선 | 10 | |
| 복지서비스과 | 동락경로당 벽지보수 | 1 | |
| 복지서비스과 | 광삼경로당 건물 외벽 천정부 페인트칠 보수 | 5 | |
| 복지서비스과 | 광안4동 경로당 신설 건의 | 650 | |
| 복지서비스과 | 육아용품 물려주기 장터개설 | | 육아종합센터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 |
| 청소행정과 | 무단투기 단속CCTV설치(수미로26번길 59-17) | 3 | |
| 안전관리과 | 방범용 CCTV 설치(구락로10번길 14) | 10 | |
| 남천1동 | 주민센터 빔프로젝터 설치 | 3 | |

라. 성인지 예산 및 성과 예산

(1)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20개 사업에 예산액 6,237백만원이다.

| 대상사업 | 사업개수 | 예산액 (백만원) | 비고 |
|-------------|------|--------------|----|
| 계 | 20건 | 6,237 | |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1 | 30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6 | 6,103 | |
| 자치단체특화사업 | 3 | 104 | |

(2) 성과예산

예산편성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부서별 예산의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예산의 성과계획)하고, 결산시 그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예산의 성과보고)를 분석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2016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며,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개, 백만원]

| 실국명 | 성과목표 | | | | | | 결산액 |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달성도 | | | |
| | | 개수 | 지표수 | 초과 달성 | 달성 | 미달성 | |
| 계 | 7 | 48 | 109 | 14 | 79 | 16 | 247,806 |
| 기획감사실 | 1 | 2 | 4 | 1 | 2 | 1 | 6,690 |
| 총무국 | 1 | 13 | 31 | 3 | 25 | 3 | 52,392 |
| 복지환경국 | 1 | 20 | 43 | 8 | 31 | 4 | 146,259 |
| 안전도시국 | 1 | 10 | 22 | 2 | 15 | 5 | 33,804 |
| 의회사무과 | 1 | 1 | 3 | | 2 | 1 | 533 |
| 보건소 | 1 | 1 | 3 | | 1 | 2 | 7,252 |
| 도서관 | 1 | 1 | 3 | | 3 | | 875 |

마. 2017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1)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및 추진결과

[2017. 6.30. 기준, 단위: 천원]

| 대상액 | 목표액 | | 집행액 | 집행률(%) | | |
|------------|------------|------------|------------|--------|-------|-------|
| | 구 자체(60%) | 행자부(55%) | | 대상액대비 | 자체대비 | 행자부대비 |
| 77,836,822 | 46,702,093 | 42,810,252 | 41,164,422 | 52.89 | 88.14 | 96.16 |

(2)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 및 추진결과

[2017.12.31. 기준, 단위: 천원]

| 대상액 | 목표액 | | 집행액 | 집행률(%) | | |
|-------------|-------------|-------------|-------------|--------|------|-------|
| | 구 자체(86.8%) | 행안부(84.2%) | | 대상액대비 | 자체대비 | 행안부대비 |
| 294,480,207 | 255,608,820 | 247,952,334 | 249,731,636 | 84.8 | 97.7 | 100.7 |

(3) 2017년 재정집행 추진 결과

2017년 이월사업 증가, 잇다른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액 증가로 재정집행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결과 행정안전부 권장 목표율(84.2%) 대비 0.6%p 상회하였다.

바.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수영구민의 삶과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과 함께 설치된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주민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 및 건축 관련 제 경비 조성을 위한 주민복지계정과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의 신축과 관련된 제 경비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계정으로 나누어 목적별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계정별 30억 원씩 총 60억 원 첫 적립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내실 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3. 법무관리

가. 법제관리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 규제 완화에 힘쓰는 등 정확한 법적용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7년도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현황

[단위: 건]

| 구 | 분 | 관리현황 | 정 비 현 황 | | | |
|------|-----|------|---------|-----|-----|-----|
| | | | 계 | 제 정 | 개 정 | 폐 지 |
| 계 | | 340 | 70 | 10 | 53 | 7 |
| 자치법규 | 조 례 | 189 | 45 | 9 | 32 | 4 |
| | 규 칙 | 72 | 22 | 1 | 20 | 1 |
| 행정규칙 | 훈 령 | 57 | - | - | - | - |
| | 예 규 | 22 | 3 | - | 1 | 2 |

부서별 정비 현황

| 구분 | 계 | 기획감사실 | 창조도시교육추진단 | 총무과 | 문화공보과 | 재무과 | 세무과 | 민원여권과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서비스과 | 자원순환과 | 환경위생과 | 지역경제과 | 교통행정과 | 안전관리과 | 건축과 | 건설과 | 토지정보과 | 도시관리과 | 의회사무과 | 보건소 | 도서관 |
|----|----|-------|-----------|-----|-------|-----|-----|-------|---------|--------|-------|-------|-------|-------|-------|-----|-----|-------|-------|-------|-----|-----|
| 계 | 70 | 6 | 1 | 13 | 8 | 5 | 8 | 2 | 0 | 5 | 4 | 0 | 0 | 1 | 5 | 2 | 1 | 1 | 1 | 5 | 1 | 1 |
| 조례 | 45 | 2 | 1 | 5 | 7 | 2 | 4 | 1 | - | 4 | 3 | - | - | 1 | 5 | 2 | 1 | 1 | 1 | 4 | 1 | - |
| 규칙 | 22 | 4 | - | 7 | 1 | 2 | 4 | 1 | - | - | 1 | - | - | - | - | - | - | - | - | 1 | - | 1 |
| 훈령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규 | 3 | - | - | 1 | - | 1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무전결규칙 정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설·조정되는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7년도 사무전결규칙 정비 현황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사무전결규칙 관리 및 정비현황

[단위: 건]

| 구분 | 기안자(★) | | | | 전결권자(○) | | | | | | |
|-------|--------|-------|-----|-------|---------|-----|-----|-------|------|------|-----|
| | 계 | 담당자 | 계장 | 실단·과장 | 계 | 담당자 | 계장 | 실단·과장 | 국장 | 부구청장 | 구청장 |
| 구분청 | 2,657 | 2,561 | 96 | - | 2,657 | 234 | 175 | 1,449 | 365 | 257 | 177 |
| 비율(%) | 100 | 96.4 | 3.6 | - | 100 | 8.8 | 6.6 | 54.5 | 13.7 | 9.7 | 6.7 |

| 구분 | 기안자(★) | | | | 전결권자(○) | | | | |
|-------|--------|------|-----|----|---------|------|------|------|------|
| | 계 | 담당자 | 계장 | 과장 | 계 | 담당자 | 계장 | 과장 | 소장 |
| 보건소 | 247 | 238 | 9 | - | 247 | 53 | 28 | 91 | 75 |
| 비율(%) | 100 | 96.3 | 3.7 | - | 100 | 21.5 | 11.3 | 36.8 | 30.4 |

| 구분 | 기안자(★) | | | | 전결권자(○) | | | |
|-------|--------|------|------|----|---------|------|------|------|
| | 계 | 담당자 | 계장 | 관장 | 계 | 담당자 | 계장 | 관장 |
| 도서관 | 45 | 40 | 5 | - | 45 | 6 | 6 | 33 |
| 비율(%) | 100 | 88.9 | 11.1 | - | 100 | 13.3 | 13.3 | 73.4 |

| 구 분 | 기 안 자 (★) | | | | 전 결 권 자 (○) | | | |
|-------|-----------|-----|-----|-----|-------------|------|------|-----|
| | 계 | 담당자 | 사무장 | 동 장 | 계 | 담당자 | 사무장 | 동 장 |
| 동 | 145 | 142 | 3 | - | 145 | 44 | 27 | 74 |
| 비율(%) | 100 | 98 | 2 | - | 100 | 30.4 | 18.6 | 51 |

나. 송무관리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작위·부작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에 그 취소·변경·무효 등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하는데 2017년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행 정 심 판 현 황

[2017.12.31. 현재]

| 접 수 | 결 과 | | | | | | 계 류 중 |
|-----|-----|-----|-----|-----|-----|-----|-------|
| | 계 | 인 용 | 각 하 | 기 각 | 감 경 | 취 하 | |
| 32 | 32 | 6 | 5 | 11 | 9 | 1 | 0 |

(2) 각종 소송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행정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사건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우리 구는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모든 소송사건의 진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관부서장의 사전검토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소송실익을 면밀히 고찰한 후 상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책임 있는 송무 수행에 앞장서 왔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 송 현 황

[2017.12.31. 현재]

| 구 분 | 피소건수 | 결 과 | | | | 계 류 중 |
|------|------|-----|-----|------|-----|-------|
| | | 승 소 | 패 소 | 일부패소 | 취 하 | |
| 계 | 21 | 14 | 1 | 1 | 3 | 2 |
| 행정소송 | 10 | 7 | 1 | 0 | 1 | 1 |
| 민사소송 | 8 | 5 | 0 | 1 | 1 | 1 |
| 국가소송 | 3 | 2 | 0 | 0 | 1 | 0 |

(3) 송무행정의 질적 향상

區 행정과 관련된 법률사안들 즉, 구의 소송위임이나 소송협의, 각종 이의신청,

법령해석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송무행정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다.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 성명 | 임기 | 사무소 | 전화번호 |
|-----|----|--------------------------------|----------|
| 정영천 | 2년 |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9(재송동) | 783-0041 |
| 김성수 | 2년 |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1401호(거제동) | 947-8989 |

다. 2018년 계획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로 법규명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및 관련 고시 등이 빈번히 제정·개정되고 있으며 행정업무가 세분화·다양화됨에 따라 쟁송의 관련쟁점이 더욱 복잡·다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쟁송의 관련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쟁송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처분 부서의 쟁송대응능력 제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송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국제화 사업

2017년은 2016년부터 발생한 외부요인들의 영향,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양국간 외교관계 정색, 호주 컴버랜드시의 새로운 지방정부 구성에 따른 우리 구와의 국제 교류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 시간 소요 등으로 국제교류의 양적 성과가 다소 위축되었지만, UN공공행정상 3라운드 중 2라운드 진출, 제11회 두바이국제우수정책평가 우수(GOOD PRACTICE) 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플랫폼 정책 각종 해외행정상에 응모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추진성과

(1) 복지플랫폼 정책 각종 해외 공공행정상 응모

-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 추진기간 : 2017. 2월 ~ 6월
 - 주관기관 : UN 경제사회국(UN DESA)
 - 응모결과 : 3라운드의 평가 과정 중 2라운드 진출
- 두바이 국제우수정책평가(Dubai International Award for Best Practices)
 - 추진기간 : 2017. 8월 ~ 2018. 1월

- 주관기관 : UN 정주계획(UN HABITAT), 두바이 정부 공동 주관
- 응모결과 : 우수(GOOD PRACTICE, 상위 30%) 등급 선정

(2) 호주 컴버랜드시와의 우호관계 지속을 위한 협의 추진

- 컴버랜드시(Cumberland City Council) 현황
 - 인구 : 22만명(2015년 기준)
 - 면적 : 72km²(오번 일부, 파라마타 일부, 홀로이드 3개시 통·폐합)
 - 특징 : 주거중심도시로 형성되었으나 최근 시드니 인근 산업지구로 급성장, NSW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도심 재개발에 역량 집중투자
- 추진경과
 - '15. 5.11.: 수영구 ↔ 오번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 '16. 5.12.: 오번시 남북으로 분할
북쪽 파라마타시에 흡수, 남쪽 홀로이드시와 병합하여 컴버랜드시 출범
 - '17. 3. 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 전문위원과 관계지속 여부 및 향후 교류방안 논의
 - '17. 7.1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 컴버랜드시 임시 운영기구 방문, 우리 구 현황 및 홍보영상 시연
 - '17. 8. 3.: 컴버랜드시로부터 향후 교류계획 요청 서한문 접수
 - '17. 9. 1.: 우리 구 향후 교류계획 및 협의사항 등 포함 서한문 회신
 - '17. 9.18.: 컴버랜드 시의회 국제교류 관련 정책추진 후순위 결정 의사 접수

나. 자매·우호교류도시 현황

| | | | |
|----------------------|--|---|----------|
| 우 호 친 선 도 시 명 | | (한 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 (본국지명) 中國 四川省 成都市 青羊區 | |
| 체결일자 | '13.4.30.(화) | 구장 : 사강(謝強) | |
| 면 적 | 68km ² | 인 구 | 537,000명 |
| 기 후 | 연평균 기온 16°C | | |
| 지리요건 | 쓰촨성 청두시에 소재한 구로서 고대 촉나라 도읍지였음. | | |
| 관 광 지 | 관짜이상즈, 두보초당, 촉금촉수박물관, 금사유적지, 무후사, 금리거리 | | |
| 주요산업 | 관광, 기술, 상업, 경제, 교통의 중심지 | | |

- 그 간 추진사항
 - '13. 3.26.: 칭양구 교류제의
 - '13. 4. 1.: 교류 후보도시 검토지시

- '13. 4.15.: 신규교류 후보도시 결재
- '13. 4.30.: 청두시 및 칭양구 대표단 5명 초청
수영구 ↔ 칭양구 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 '13. 5.14.: 청두시 교육·언론인 19명 수영구 방문
수영구 초청의사 보내음
- '13. 5.20.: 청두국제무형문화유산축제 방문계획 수립
- '13. 5.21.: 청두국제무형문화유산축제 초청장 접수
- '13. 6.12. ~ 6.16. : 초청에 따른 칭양구 방문 및 청두국제무형문화유산 축제
개막식 참석 수영야류 등 우리구문화재 전시부스 운영 (6/15~6/23)
- '13. 7.15.: 초청에 대한 감사 및 홍수 위로안부 서한문
- '14.10. 8.: 제15회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 초청장 접수
- '14.10.21. ~ 10.25.: 초청에 따른 칭양구 방문 및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 참가
“수영구 문화관광업 성공사례 및 칭양구와의 미래전망” 발표
- '15. 2. 4.: 춘절 축하 서한문 발송
- '15. 2.12.: 제15회 광안리 어방축제 초청장 발송
- '15. 2.26.: 칭양구 서기 취임 축하 서한문 발송
- '15. 8.18.: 제11회 부산불꽃축제 초청장 발송
- '15.11. 5.: 2016년 중 우리구 방문 및 자매결연 희망 전문 접수
- '16. 2.25.: 칭양구로부터 자매결연 협약서 초안 접수
- '16. 3.24.: 제19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에서 자매결연동의안 가결
- '16. 7.26.: 청두시 내부사정으로 10월 중 우리구 방문계획 취소 통보
- '17. 2.16.: 양 도시간 청소년교류 추진 등 우호관계 지속의견 접수

8. 조직관리

가. 기구 및 인력

산업의 발달, 주민의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구민의 다양한 욕구증대로 교통·환경·복지행정의 강화 등 도시행정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이양업무의 증가로 조직의 전문화와 인력보강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생산성 높은 조직설계와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 구 변 천

| 일 자 | 내 용 |
|------------------------|--|
| 1994.12.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직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 공포 |
| 1995. 1. 1. ~ 2.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수영구 설치 준비단 발족(24명) |
| 1995. 2.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구·신설군 행정기구 및 정원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本청 : 3국 2실 16과 60계 344명 · 의 회 : 1국 1계 3전문위원 13명 · 보건소 : 1과 4계 47명 · 동 : 10동 168명 |
| 1995. 3.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현황 : 區本청, 보건소, 동, 의회사무국 포함(4국 1소 2실 17과 65계 10동) |
| 1995. 8.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축소(5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 환경순찰계 · 세무과 징수2계, 체납정리계 · 지역경제과 산업계 · 건설과 보상계 ◦ 주민이 알기쉬운 계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과 부과1계 → 세무과 시세계, 부과2계 → 구세계 · 청소과 청소행정계 → 청소과 청소계, 청소2계 → 옥내청소계 · 교통행정1계 → 교통지도계 교통행정2계 → 교통징수계 ◦ 기구현황 : 4국 1소 2실 17과 60계 10동 |
| 1995. 9.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2실 1과 2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보좌관실, 공보관실, 문화관광과(건전생활계, 국제협력계) · 통·폐합 (3과 2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과 → 총무과 민방위계 - 사회과 +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노정계 + 의료보장계 → 사회복지과 노사의료계 · 폐 지 (1실 2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보실, 총무과 진흥계, 민방위과 교육훈련계 ◦ 기능조정 (2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비과 기전계 → 건설과 기전계 · 건설과 가로정비계 → 도시정비과 가로정비계 ◦ 기구현황 : 4국 3실 16과 59계 10동 |

| 일 자 | 내 용 |
|-------------|---|
| 1995.12.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기구 승인에 따른 기구개편 [3국 3실 15과 56계, 의회사무국, 보건소, 10동] · 신 설 (1실 1과 2계) :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과 주민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 폐 지 (1실 1과): 정책보좌관실, 시민과 ·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과 → 청소행정과, 지역교통과 → 교통행정과 - 재무과 관재계 → 재무과 재산관리계 - 사회복지과 사회계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 |
| 1997. 7.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 및 재난위기관리 능력강화관련 係 신설 ·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신설 [3국 3실 15과 58계, 의회사무국, 보건소, 10동] ○ 기구개편 [1실 3국 18담당관과 61계, 의회사무국, 보건소, 10동] · 신 설 : 기획실, 징수과, 전산계, 세무관리계, 세무1계, 세무2계, 체납정리계, 부동산관리계, 의회사무국 의정계 · 폐 지 : 문화관광과, 시세계, 구세계, 세무조사계 ○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담당관실 · 공보관실 → 문화공보담당관실 · 재 무 과 → 재무담당관실 · 민원봉사실 → 민원봉사과 · 행정통계계 → 조직통계계 · 징 수 계 → 징수관리계 · 토지관리계 → 지적행정계 · 지 정 계 → 지가관리계 ○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계 → 재무담당관 · 국제협력계 → 기획감사담당관 · 건전생활계 → 총무과 · 징수관리계, 세외수입계 → 징수과 |
| 1998. 9.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감축(584명→504명, 80명 감축) ○ 기구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실,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 · 세무과 + 징수과 → 세무과, 환경보호과 + 청소행정과 → 환경청소과 ○ 계제 폐지 ○ 과별 사무분장 실시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과로 개편 ○ 동 사무장제 및 주임제 폐지 → 주무제 운영 |

| 일 자 | 내 용 |
|-------------|--|
| 1998.11.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조례 등 통합조례 시행 [행정자치부 통합조례 표준모델(안), 1998.10.27] ·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별 대강분장사무를 국별로 분장 - 보건소 설치조례 폐지 - 국제협력·교류사무(기획감사실 → 총무과) · 정원조례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구분 |
| 1998.11.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시행으로 보건소 직제규칙과 洞 직제 규칙 폐지 ◦ 정원조례시행규칙을 정원규칙으로 제명 변경 ◦ 의회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을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으로 제명 변경 |
| 1999. 8.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감축 : 45명(정원 504명 → 459명) ◦ 기구감축 ▷ 3국 15실과 55담당, 의회사무과, 10동 · 도시정비과 폐지 ※ 한시기구 설치 ▷ 1과 3담당 · 명 칭 : 도시관리과 (재난관리, 수변관리, 광고물관리) · 기 한 : 2000. 6.30. |
| 2000. 8.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기구 기한연장 ▷ 2001. 6.30. |
| 2000. 9.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민원과 신설 <건축과 → 허가민원과로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지도담당, 건축1담당, 건축2담당, 일반허가담당 ◦ 환경청소과(청소행정담당, 환경정화담당, 재활용담당, 환경관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행정과(청소행정담당, 환경정화담당, 재활용담당) ◦ 위생과(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1담당, 식품위생2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위생과(공중위생담당, 환경관리담당, 식품위생담당) ※ 위생과의 식품위생2담당을 허가민원과로 조정하여 일반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
| 2001. 8.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기구 기한연장 ▷ 2002.12.31. |
| 2002. 5.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설립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 - 사업소(도서관)장의 직급 ▷ 지방사서주사 - 총정원 9명 증원(466명 → 475명) |

| 일 자 | 내 용 |
|-------------|--|
| 2003. 2.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기구 기한 연장 ▷ 2004. 6.30. |
| 2003. 7.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명칭 변경 : 허가민원과 → 건축과 ○ 담당명칭 변경 : 기능 및 분장사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정비(건설과) → 도시행정(도시관리과) · 재난관리 → 방재(도시관리과) · 수변관리(도시관리과) + 해수욕장관리(총무과) → 해변공원(도시관리과) · 실업대책(총무과) → 노사의료(사회복지과) · 식품접객, 오수정화 안.허가업무(허가민원과) →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
| 2004. 6.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분권담당 신설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
| 2004.12.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단체담당 신설 ·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 2005. 7.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課 신 설 : 재난관리과 ○ 課 기능조정 : 도시관리과 (한시기구 ⇒ 여유키구) ○ 課 명칭변경 : 지적과 ⇒ 토지정보과 ○ 담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지 : 주민자치(행정6급), 가스안전(담당직렬조정) · 신 설 : 주민(행정6급), 조사평가(세무6급), 자동차관리(행정6급) 안전관리(행정6급), 복구하수(행정.토목건축6급) · 명칭변경 : 공무원단체 ⇒ 직원복지, 시세 ⇒ 세무1 구세 ⇒ 세무2, 지적행정 ⇒ 토지조사, 지적 ⇒ 지적정보, 방재 ⇒ 재난관리, 해변공원 ⇒ 해변관리 ○ 기구현황 : 4국 1실 15과 60담당,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10동 |
| 2005.12.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신설 : 생활보장담당 ○ 담당 명칭변경 : 사회복지담당 ⇒ 복지기획담당 도시정비담당 ⇒ 도시계획담당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전담인력 확충 · 사업별예산의 시범편성을 위한 한시정원 책정 |

| 일 자 | 내 용 |
|-------------|---|
| 2007.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명칭 변경 : 사회산업국 ⇒ 주민생활지원국 ◦ 과 폐지 : 재무과, 사회복지과 ◦ 과 명칭변경 : 민원봉사과 ⇒ 민원회계과 ◦ 과(단) 신설 : 정책개발단,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담당조정 : 본청 61담당 ⇒ 61담당, 보건소 3담당 ⇒ 4담당(증 1) · 부서이동 : 경리·정보전산(민원), 정보통신(총무), 재산관리(토지) · 통 합(2) : 총무+직원복지 ⇒ 인력관리, 안전관리+복구하수 ⇒ 복구지원 · 폐 지(4) : 건전생활, 주민, 노사의료, 예방의약 · 신 설(7) : 평생학습, 복지연계, 통합조사, 자활고용, 재개발, 의약, 전염병관리 · 명칭변경 : 세외수입 ⇒ 징수관리, 경리 ⇒ 회계 ◦ 등 : 4개동에 행정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 |
| 2008.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정원 조기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 · 구분청 : 367명 ⇒ 336 명(감1명) (증 3명 - 별정직1, 기능직 8·9급 각 1명) (감 4명 - 일반직 9급 1명, 별정직 7급 1명, 기능직 10급 2명) ◦ 직속기관 : 34명 ⇒ 35명(증 기능직 9급 1명) |
| 2008. 5.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사무 전담인력 확충과 재할용품 수거체계 개선 관련 조정 · 민원회계과 : 증 4명 · 복지서비스과 : 증 1명 · 청소행정과 : 감 1명 · 환경위생과 : 증 2명 · 교통행정과 : 증 1명 |
| 2008.10.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2008.5.1.)에 따라 정원 5% 감축 조정 [총정원 : 529 ⇒ 503명(감 26명)] · 일반직 정원 조정 : 450명 → 431명(감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 행정 증1, 행정·세무 감1 - 7급 : 감 5(행정 감5) - 8급 : 감 5(행정 감5) - 9급 : 감 9(행정 감5, 사회복지 감1, 의료기술 감1, 시설 감1, 보건·식품위생 감1) |
| 2008.10.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직 정원 조정: 75명 → 68명(감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급 : 감 2(운전원 감3, 사무원 감3, 조무원 증 4) - 10급 : 감 5(운전원 증3, 사무원 증2, 조무원 감10) |

| 일 자 | 내 용 |
|-------------|--|
| 2009.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기구 폐지에 따른 사무의 연계성·기능 고려 부서 신설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인력을 전환 배치 ◦ 조직 : 3국1실1단15과57담당 ⇒ 3국1실16과59담당(감1단, 증1과, 증2담당) 보건소, 도서관, 의회, 동 : 변동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조정 : 정책개발단 폐지, 재무과 신설, 민원회계과→민원봉사과 ▷ 담당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 : 기획법무담당 ⇒ 기획담당, 조직법무담당 - 신설 : 재산관리담당 - 이동 : 회계담당, 정보전산담당, 정보통신담당 ◦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 : 건축과 ⇒ 교통행정과 - 구청사 및 관사관리 업무 : 총무과 ⇒ 재무과 - 국·시·구유 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 토지정보과 ⇒ 재무과 - 부서 신설, 폐지에 따른 사무 이동 ◦ 정원 : 503명(변동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청 감 3, 도서관 증 3 |
| 2009. 4.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책정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관련,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따라 부서별·직렬별 정원 조정 ◦ 정원 : 503명(변동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보과 : 증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문화원설립, 소년소녀합창단구성·운영,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설치·관리 운영 · 복지서비스과 : 증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교통행정과 : 증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업무, 자전거 관련 업무 · 세무과 감 1명, 남천2동 감 1명, 광안3동 감 1명 |
| 2009.12.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지침 시달(2009.11.09)에 따라 부서별 정원 조정(정원 503명 변동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지원과 : 증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조사담당』 ⇒ 『통합조사관리담당』 명칭변경, 인력보강(증 2명) - 『민생안정팀』 ⇒ 『복지연계담당』 기능전환(증 1명) · 지역경제과 : 증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 대부업 업무 신설 관련 지역경제과 인력보강(증 1명) · 망미1동, 망미2동, 수영동, 민락동 각1명씩 감 |

| 일 자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2.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세외수입업무 전담담당 신설 ◦ 조직 : 3국1실16과60담당 → 3국1실16과61담당(증1담당) · 담당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세입통계담당 ◦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통계, 지출예산제도, 제증명 등 ◦ 정원 : 503명(변동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 6.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책기획담당관 - 21(2011.01.03)호에 따라 총정원 증원 및 사무감소분야 정원 조정 등 - 정원 조정 : 총정원 503 → 505명(증 2) · 일반직 ▷ 431명 → 438명 (증 7명 - 6급 1, 7급 2, 8급 2, 9급 2) · 기능직 ▷ 68명 → 63명 (감 5명 - 7급 1, 9급 1, 10급 3) - 담당 신설·조정 : 61담당 → 63담당 · 신설 : 통합관제담당(총무과), 일자리창출담당(지역경제과) · 조정 : 건축과(주택담당→도시디자인담당, 재개발담당→도심재생담당)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담당→새주소관리담당) - 사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과 內 희망일자리추진팀(TF)업무 → 지역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 8.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적체 해소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 상향조정 -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계</th> <th>4급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직급별 비율</td> <td>현재</td> <td>100%</td> <td>1.2%이내</td> <td>7.5%이내</td> <td>21%이내</td> <td>30%이내</td> <td>31.1%이내</td> <td>9.2%이상</td> </tr> <tr> <td>조정</td> <td>100%</td> <td>1.2%이내</td> <td>7.5%이내</td> <td>22%이내</td> <td>30%이내</td> <td>30%이내</td> <td>9.3%이상</td> </tr> <tr> <td>증감</td> <td>-</td> <td>-</td> <td>-</td> <td>증 1%</td> <td>-</td> <td>감 1.1%</td> <td>증 0.1%</td> </tr> <tr> <td rowspan="3">직급별 정원</td> <td>현재</td> <td>438명</td> <td>5명</td> <td>32명</td> <td>91명</td> <td>131명</td> <td>136명</td> <td>43명</td> </tr> <tr> <td>조정</td> <td>438명</td> <td>5명</td> <td>32명</td> <td>96명</td> <td>-</td> <td>131명</td> <td>43명</td> </tr> <tr> <td>증감</td> <td>-</td> <td>-</td> <td>-</td> <td>증 5명</td> <td></td> <td>감 5명</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계</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10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직급별 비율</td> <td>현재</td> <td>100%</td> <td>5%이내</td> <td>17%이내</td> <td>22%이내</td> <td>33%이내</td> <td>23%이상</td> </tr> <tr> <td>조정</td> <td>100%</td> <td>7.5%이내</td> <td>23.5%이내</td> <td>25%이내</td> <td colspan="2">44%이상</td> </tr> <tr> <td>증감</td> <td>-</td> <td>증 2.5%</td> <td>증 6.5%</td> <td>증 3%</td> <td colspan="2">감 12%</td> </tr> <tr> <td rowspan="3">직급별 정원</td> <td>현재</td> <td>63명</td> <td>3명</td> <td>10명</td> <td>13명</td> <td>20명</td> <td>17명</td> </tr> <tr> <td>조정</td> <td>63명</td> <td>4명</td> <td>14명</td> <td>16명</td> <td colspan="2">29명</td> </tr> <tr> <td>증감</td> <td>-</td> <td>증 1명</td> <td>증 4명</td> <td>증 3명</td> <td colspan="2">감 8명</td> </tr> </tbody> </table> | 구 분 | | 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직급별 비율 | 현재 | 100% | 1.2%이내 | 7.5%이내 | 21%이내 | 30%이내 | 31.1%이내 | 9.2%이상 | 조정 | 100% | 1.2%이내 | 7.5%이내 | 22%이내 | 30%이내 | 30%이내 | 9.3%이상 | 증감 | - | - | - | 증 1% | - | 감 1.1% | 증 0.1% | 직급별 정원 | 현재 | 438명 | 5명 | 32명 | 91명 | 131명 | 136명 | 43명 | 조정 | 438명 | 5명 | 32명 | 96명 | - | 131명 | 43명 | 증감 | - | - | - | 증 5명 | | 감 5명 | - | 구 분 | | 계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직급별 비율 | 현재 | 100% | 5%이내 | 17%이내 | 22%이내 | 33%이내 | 23%이상 | 조정 | 100% | 7.5%이내 | 23.5%이내 | 25%이내 | 44%이상 | | 증감 | - | 증 2.5% | 증 6.5% | 증 3% | 감 12% | | 직급별 정원 | 현재 | 63명 | 3명 | 10명 | 13명 | 20명 | 17명 | 조정 | 63명 | 4명 | 14명 | 16명 | 29명 | | 증감 | - | 증 1명 | 증 4명 | 증 3명 | 감 8명 | |
| 구 분 | | 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 비율 | 현재 | 100% | 1.2%이내 | 7.5%이내 | 21%이내 | 30%이내 | 31.1%이내 | 9.2%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100% | 1.2%이내 | 7.5%이내 | 22%이내 | 30%이내 | 30%이내 | 9.3%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감 | - | - | - | 증 1% | - | 감 1.1% | 증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 정원 | 현재 | 438명 | 5명 | 32명 | 91명 | 131명 | 136명 | 4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438명 | 5명 | 32명 | 96명 | - | 131명 | 4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감 | - | - | - | 증 5명 | | 감 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계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 비율 | 현재 | 100% | 5%이내 | 17%이내 | 22%이내 | 33%이내 | 23%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100% | 7.5%이내 | 23.5%이내 | 25%이내 | 44%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감 | - | 증 2.5% | 증 6.5% | 증 3% | 감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 정원 | 현재 | 63명 | 3명 | 10명 | 13명 | 20명 | 1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 63명 | 4명 | 14명 | 16명 | 2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감 | - | 증 1명 | 증 4명 | 증 3명 | 감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자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 9.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렬과 직무가 부합되지 않는 사무직렬 외 기능직공무원의 사무직렬로의 전직을 위하여 정원채정기준 및 정원 조정 - 기능직 정원채정기준에 따른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table border="1" data-bbox="409 475 1302 80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409 475 491 516">구 분</th> <th data-bbox="491 475 598 516">계</th> <th data-bbox="598 475 688 516">6급</th> <th data-bbox="688 475 779 516">7급</th> <th data-bbox="779 475 869 516">8급</th> <th data-bbox="869 475 960 516">9급·10급</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9 516 491 657" rowspan="3">직급별 비율</td> <td data-bbox="491 516 598 556">조정 전</td> <td data-bbox="598 516 688 556">100%</td> <td data-bbox="688 516 779 556">7.5%이내</td> <td data-bbox="779 516 869 556">23.5%이내</td> <td data-bbox="869 516 960 556">25%이내</td> <td data-bbox="960 516 1035 556">44%이상</td> </tr> <tr> <td data-bbox="491 556 598 596">조정 후</td> <td data-bbox="598 556 688 596">100%</td> <td data-bbox="688 556 779 596">7.5%이내</td> <td data-bbox="779 556 869 596">26.5%이내</td> <td data-bbox="869 556 960 596">39.5%이내</td> <td data-bbox="960 556 1035 596">26.5%이상</td> </tr> <tr> <td data-bbox="491 596 598 657">증감</td> <td data-bbox="598 596 688 657">-</td> <td data-bbox="688 596 779 657">-</td> <td data-bbox="779 596 869 657">증 3%</td> <td data-bbox="869 596 960 657">증 14.5%</td> <td data-bbox="960 596 1035 657">감 17.5%</td> </tr> <tr> <td data-bbox="409 657 491 802" rowspan="3">직급별 정원</td> <td data-bbox="491 657 598 697">조정 전</td> <td data-bbox="598 657 688 697">63명</td> <td data-bbox="688 657 779 697">4명</td> <td data-bbox="779 657 869 697">14명</td> <td data-bbox="869 657 960 697">15명</td> <td data-bbox="960 657 1035 697">30명</td> </tr> <tr> <td data-bbox="491 697 598 737">조정 후</td> <td data-bbox="598 697 688 737">63명</td> <td data-bbox="688 697 779 737">4명</td> <td data-bbox="779 697 869 737">16명</td> <td data-bbox="869 697 960 737">24명</td> <td data-bbox="960 697 1035 737">19명</td> </tr> <tr> <td data-bbox="491 737 598 802">증감</td> <td data-bbox="598 737 688 802">-</td> <td data-bbox="688 737 779 802">증감없음</td> <td data-bbox="779 737 869 802">증 2</td> <td data-bbox="869 737 960 802">증 9</td> <td data-bbox="960 737 1035 802">감 11</td> </tr> </tbody> </table> | 구 분 | | 계 | 6급 | 7급 | 8급 | 9급·10급 | 직급별 비율 | 조정 전 | 100% | 7.5%이내 | 23.5%이내 | 25%이내 | 44%이상 | 조정 후 | 100% | 7.5%이내 | 26.5%이내 | 39.5%이내 | 26.5%이상 | 증감 | - | - | 증 3% | 증 14.5% | 감 17.5% | 직급별 정원 | 조정 전 | 63명 | 4명 | 14명 | 15명 | 30명 | 조정 후 | 63명 | 4명 | 16명 | 24명 | 19명 | 증감 | - | 증감없음 | 증 2 | 증 9 | 감 11 |
| 구 분 | | 계 | 6급 | 7급 | 8급 | 9급·10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 비율 | 조정 전 | 100% | 7.5%이내 | 23.5%이내 | 25%이내 | 44%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후 | 100% | 7.5%이내 | 26.5%이내 | 39.5%이내 | 26.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감 | - | - | 증 3% | 증 14.5% | 감 1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 정원 | 조정 전 | 63명 | 4명 | 14명 | 15명 | 3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 후 | 63명 | 4명 | 16명 | 24명 | 1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감 | - | 증감없음 | 증 2 | 증 9 | 감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3.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사회복지직 순증 및 지방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일반직·기능직간 정원조정 - 조정내용 : 총정원 505명 → 513명 (증 8) - 일반직 438명 → 454명 (증16명 -6급 3, 7급 7, 9급 6) - 기능직 63명 → 55명 (감 8명 - 7급 3, 8급 4, 9급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4.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지원국내 사무조정에 담당 및 사무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3960(2012.2.13) - 담당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연계담당 → 희망복지지원담당 · 노인아동청소년담당 → 노인장애인담당 · 자활장애인담당 → 아동보육담당 · 여성보육담당 → 여성청소년담당 - 사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업무 : 복지서비스과 → 주민생활지원과(생활보장담당) · 일자리, 고용관련업무(노동조합, 취업정보센터, 등) 복지서비스과 → 지역경제과(일자리창출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8.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별표 2) 중 - 3. 별정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정원포함)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별표 3) 에“비고 신설 ·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정원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자 | 내 용 |
|-------------|---|
| 2012.12.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사회복지직 신규충원계획 정원을 반영하고, 기능직 공무원(사무실무)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 정원 조정 : 총정원 : 513명 → 517명 · 일반직 : 454명 → 465명, 기능직 : 55명 → 48명 - 일반직 : 증 11명 (6급 3, 7급 6, 9급 2) - 기능직 : 감 5명 (7급 3, 8급 2) |
| 2013. 3.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국정시책업무인 상세주소관리1, 복지인력 지원2을 총정원에 반영, 민간위탁으로 기능직공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1% 6급정원 증으로 일반직·기능직간 정원조정 - 비율조정 : 일반직 6급 22% →23%, 9급 10.3% →9.3% 기능직 6급 8.4%→8.7%, 9급 26.5%→26.2% - 조정내용 : 총정원 517명 → 520명 (증 3) - 일반직 465명 → 470명(증 5명) : (증8명-6급 6, 7급 1, 8급 1), (감 1명-9급 3) - 기능직 48명 → 46명(감 2명) : (증1명-7급 1, 감3명-9급 3) |
| 2013. 5.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사무실무)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일반직 : 470명 → 471명 , 기능직 : 46명 → 45명 - 일반직 : 증 1명 (증 9급1) - 기능직 : 감1명 (감 9급1) |
| 2013. 6.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확충인력에 따른 정원규칙 및 규정 정원 조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조정(별표1) ▷행정서기보 : 구분청 15명 → 17명(증2), 동 13명 → 11명(감2) ▷사회복지서기보 : 구 분청 3명 → 1명(감2), 동 8명 → 10명(증2) ▷부서별 정원조정 - 세무과 감 2 - 주민생활지원과 : 증2 - 남천1동, 남천2동 : 각각 사회복지 증1, 행정 감 1 |
| 2013. 9.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사회복지직 신규충원계획 정원을 반영하고, 기능직 공무원(사무실무)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 정원 조정 : 총정원 : 520명 → 522명 · 일반직 : 471명 → 476명, 기능직 : 45명 → 42명 - 일반직 : 증 5명 (6급 1, 7급 2, 9급 2) - 기능직 : 감 3명 (6급 1, 8급 2) |

| 일 자 | 내 용 |
|-------------|--|
| 2013.1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명칭변경 :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환경국, 도시국 ⇒ 안전도시국 ◦ 부서명칭변경 : 재난관리 ⇒ 안전관리과 ◦ 부서담당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 재난관리 ⇒ 안전관리, 복구지원 ⇒ 예방복구 노인장애인 ⇒ 노인복지, 아동보육 ⇒ 보육 - 이 동 : 통합관제(총무과 ⇒ 안전관리과) - 신 설 : 아동장애인담당 |
| 2013.12.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개편 시행일(13.12.12)에 맞춰 기능직·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 반영에 따른 정원 조정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비율 80% 이상 ⇒ 99% 이상, 기능직 비율 삭제 - 별정, 정무직 비율 2% 이내 ⇒ 1% 이내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이상 : 1.2% 이내 → 1% 이내(감 0.2%) · 5급 : 7% 이내 → 6.5%이내(감 0.5%) · 8급 : 28.5% 이내 → 29%이내(증 0.5%), · 전문경력관 신설 : 나군(통계조사원)(증 0.2%) - 기능직 공무원 : 삭제 - 별정직 공무원 : 5급 상당 : 33.4% 이내 → 50% 이내 6급 상당 : 66.6% 이내 → 50% 이상 다. 직급별 정원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 476 → 519명 증 43명 (6급 10, 7급 8, 8급 14, 9급 10) - 기능직 : 42명 → 0명 - 별정직 : 3명 → 2명 감 1명 (6급 1) - 전문경력관 신설 : 0 → 나군 |
| 2014. 4.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정원 : 522명 → 530명 (증 8명) - 일반직 : 519명 → 527명(증 8명-6급 2, 9급 6) ◦ 담당조정 : 구분청 64담당 → 65담당(증 1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 지방소득담당(세무과) - 명칭변경 : 소득과표담당 → 과표담당 (세무과) |

| 일 자 | 내 용 |
|-------------|---|
| 2014. 6.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 1% 자율정원 사용으로 정원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정원 : 530명 → 535명(증 5명) - 일반직 : 527명 → 532명(증 5명-6급 1, 7급 1, 9급 4, 감 1명-8급 1) ○ 담당조정 : 구분청 65담당 → 66담당(증 1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 규제개혁담당(기획감사실) |
| 2015.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조정 : 구분청 66담당 → 67담당(증1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 드림스타트담당(복지서비스과) |
| 2015. 7.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정원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정원 : 535명 → 539명 (증7명) - 일반직 : 532명 → 539명 (증7명-6급2, 7급1, 8급1, 9급3) ○ 계조정 : 67계 → 69계(증2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 정책개발계(기획감사실) - 분 리 : 평생학습계 → 평생학습계, 생활체육계(총무과) - 명칭변경 : 세무1계 → 취득세계, 세무2계 → 재산세계, 세입통계계 → 세외수입계(세무과) <p>※ 「부산광역시 수영구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체 운영 지침」 개정 (1531)에 따라 “담당”을“계장”으로 동 “주무”를 동“사무장”으로 명칭변경</p> |
| 2016.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직군 정원 감 5명 (14명 ⇒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운영 감2(6급1, 8급1), 전화상담운영 8급 감1, 전기운영 8급 감1, 보건운영 9급 감1 - 행정, 사회복지, 공업, 보건직 정원 증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2(6급 1, 8급 1), 사회복지 8급 1, 공업 8급 1, 보건9급 1 |
| 2016.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복지기능강화 및 재난업무 인력 반영 등 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정원 : 542명 ⇒ 551명(증 9명) - 일반직 : 539명 ⇒ 548명(증 9명 - 6급2, 8급3, 9급4) |
| 2016.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직군 정원 감 2명(9명⇒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운영8급 감1, 사무운영8급 감1 - 행정8급 증 2명 |

| 일 자 | 내 용 |
|------------|---|
| 2016.1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정원 책정 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비율 : 24% ⇒ 25% 상향 조정 ◦ 행정기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청 : 3국1실16과70계 ⇒ 3국1실16과69계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 : 규제개혁계 폐지 ▷ 건 축 과 : 도심재생 T/F팀 신설 - 보건소 : 1과 4계 ⇒ 1과 5계(증 1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의약계 : 예방계 + 감염병관리계 신설 - 동 : 15사무장 ⇒ 16사무장(증 1사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천1동 : 동 복지기능강화(권역형)에 따른 복지사무장 신설 |
| 2016.12.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 16사무장 ⇒ 17사무장(증 1사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2동 : 동 복지기능강화(권역형)에 따른 복지사무장 신설 |
| 2017.3.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정원 : 551명 ⇒ 564명(증 13명) - 일반직 : 548명 ⇒ 561명(증 13명) ◦ 행정기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청 : 3국1실16과69계1팀 ⇒ 3국1실16과70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 : 정책개발계 → 인구정책계(명칭변경) ▷ 건 축 과 : 도심재생 T/F팀 → 도심재생계(팀 폐지, 계 신설) |
| 2018.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하반기 증원 지침에 따른 정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정원 : 564명 ⇒ 577명(증 13명) - 일반직 : 561명 ⇒ 574명(사회복지 및 행정수요 반영) ◦ 행정기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청 : 3국1실16과70계 ⇒ 3국1실1단16과73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설 : 창조도시교육추진단 ▷ 계 신설 : 창조기획계(창조도시교육추진단,체육센터운영계(총무과), 하수계(건설과)) ▷ 계 이동 : 기전계(건설과)→안전관리과 ▷ 계 이동 및 명칭변경 : 평생학습계(총무과)→창조교육계(창조도시교육추진단, 도심재생계(건축과)→창조사업계(창조도시교육추진단)) - 동 : 10개동 17사무장 → 10개동 19사무장(증2사무장) |

정 원 변 천

| 일자 | 구분 | 계 | 정무 | 일 반 직 | | | | | | | 별정 | 기능 | 고용 | |
|-------------|----|--------|----|--------|------|----|----|--------|-----|-----|----|----|-----|----|
| | | | | 소계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 | | 9급 |
| '95. 3. 1. | | 572(1) | | 422(1) | 1(1) | 6 | 33 | 78 | 136 | 111 | 57 | 19 | 99 | 32 |
| '95. 4.24. | | 578(1) | | 426(1) | 1(1) | 6 | 33 | 78 | 137 | 113 | 58 | 19 | 101 | 32 |
| '95. 6.14. | | 577 | 1 | 426 | 1 | 6 | 33 | 78 | 137 | 113 | 58 | 18 | 101 | 31 |
| '95. 7.20. | | 575(1) | 1 | 425(1) | 1(1) | 6 | 33 | 78 | 136 | 113 | 58 | 19 | 101 | 29 |
| '95.12.21. | | 577(1) | 1 | 425(1) | 1(1) | 6 | 33 | 78 | 136 | 113 | 58 | 19 | 104 | 28 |
| '95.12.30. | | 578(1) | 1 | 426(1) | 1(1) | 6 | 33 | 79 | 136 | 113 | 58 | 19 | 104 | 28 |
| '96. 2.21. | | 579(1) | 1 | 426(1) | 1(1) | 6 | 33 | 79 | 136 | 113 | 58 | 21 | 104 | 27 |
| '96. 7. 1. | | 581(1) | 1 | 429(1) | 1(1) | 6 | 33 | 80 | 137 | 114 | 58 | 21 | 104 | 26 |
| '96.11.30. | | 586(1) | 1 | 436(1) | 1(1) | 7 | 33 | 83 | 138 | 116 | 58 | 21 | 104 | 24 |
| '97.12.31. | | 586(1) | 1 | 436(1) | 1(1) | 7 | 33 | 83 | 138 | 116 | 58 | 21 | 104 | 24 |
| '98. 9.16. | | 504 | 1 | 400 | 1 | 4 | 30 | 66 | 121 | 114 | 64 | 13 | 81 | 9 |
| '99. 8.14. | | 486 | 1 | 392 | 1 | 4 | 29 | 65 | 120 | 112 | 61 | 13 | 80 | - |
| '99.12.21. | | 490 | 1 | 403 | 1 | 4 | 30 | 67 | 124 | 115 | 62 | 6 | 80 | - |
| '00. 8. 1. | | 478 | 1 | 395 | 1 | 4 | 30 | 66 | 122 | 113 | 59 | 3 | 79 | - |
| '00.11.15. | | 479 | 1 | 396 | 1 | 4 | 30 | 66 | 123 | 113 | 59 | 3 | 79 | - |
| '01.12.31. | | 465 | 1 | 381 | 1 | 4 | 30 | 64 | 121 | 106 | 55 | 3 | 75 | 5 |
| '02.10. 1. | | 477 | 1 | 389 | 1 | 4 | 29 | 65 | 126 | 108 | 56 | 3 | 79 | 5 |
| '03. 7. 1. | | 481 | 1 | 395 | 1 | 4 | 29 | 71 | 118 | 116 | 56 | 3 | 77 | 5 |
| '04.12.10. | | 499 | 1 | 416 | 1 | 4 | 29 | 79 | 120 | 128 | 55 | 3 | 79 | - |
| '05. 7. 1. | | 516 | 1 | 434 | 1 | 4 | 30 | 82 | 125 | 134 | 58 | 3 | 78 | - |
| '05.12. 1. | | 524 | 1 | 442 | 1 | 4 | 30 | 83 | 128 | 137 | 59 | 3 | 78 | - |
| '06. 3.31. | | 525 | 1 | 443 | 1 | 4 | 30 | 83 | 128 | 137 | 60 | 3 | 78 | - |
| '06.10.25. | | 525 | 1 | 443 | 1 | 4 | 31 | 84 | 128 | 137 | 58 | 3 | 78 | - |
| '07. 1. 1. | | 525 | 1 | 446 | 1 | 4 | 32 | 84 | 129 | 138 | 58 | 3 | 75 | - |
| '08. 1. 1. | | 525 | 1 | 446 | 1 | 4 | 32 | 84 | 129 | 139 | 58 | 3 | 75 | - |
| '08. 5. 1. | | 529 | 1 | 450 | 1 | 4 | 32 | 85 | 130 | 139 | 59 | 3 | 75 | - |
| '08.10. 1. | | 503 | 1 | 431 | 1 | 4 | 32 | 85 | 125 | 134 | 50 | 3 | 68 | - |
| '09. 4.14. | | 503 | 1 | 431 | 1 | 4 | 32 | 90 | 129 | 134 | 41 | 3 | 68 | - |
| 2011. 6. 1. | | 505 | 1 | 438 | 1 | 4 | 32 | 91 | 131 | 136 | 43 | 3 | 63 | - |
| 2011. 8.30. | | 505 | 1 | 438 | 1 | 4 | 32 | 96 | 131 | 131 | 43 | 3 | 63 | |
| 2012. 3.21. | | 513 | 1 | 454 | 1 | 4 | 32 | 99 | 138 | 131 | 49 | 3 | 55 | |
| 2012.12.21. | | 517 | 1 | 465 | 1 | 4 | 32 | 102 | 144 | 132 | 50 | 3 | 48 | |
| 2013. 3. 6. | | 520 | 1 | 470 | 1 | 4 | 32 | 108 | 145 | 133 | 47 | 3 | 46 | |
| 2013. 5. 1. | | 520 | 1 | 471 | 1 | 4 | 32 | 108 | 145 | 133 | 48 | 3 | 45 | |
| 2013.12.12. | | 522(1) | 1 | 519(1) | 1 | 4 | 32 | 100(1) | 155 | 147 | 60 | 2 | - | - |

| 일자 | 구분 | 계 | 정무 | 일 반 직 | | | | | | | | 별정 | 기능 | 고용 |
|-------------|----|--------|----|--------|----|----|----|--------|-----|-----|----|----|----|----|
| | | | | 소계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2014. 2. 6. | | 522(1) | 1 | 519(1) | 1 | 4 | 32 | 120(1) | 158 | 146 | 58 | 2 | - | - |
| 2014. 4.15. | | 530(1) | 1 | 527(1) | 1 | 4 | 32 | 122(1) | 158 | 146 | 64 | 2 | - | - |
| 2014. 6.23. | | 535(1) | 1 | 532(1) | 1 | 4 | 32 | 123(1) | 159 | 145 | 68 | 2 | - | - |
| 2015. 1. 1. | | 535 | 1 | 532 | 1 | 4 | 32 | 127 | 159 | 142 | 67 | 2 | - | - |
| 2015. 7. 1. | | 542 | 1 | 539 | 1 | 4 | 32 | 129 | 160 | 143 | 70 | 2 | - | - |
| 2016. 4. 1 | | 551 | 1 | 548 | 1 | 4 | 32 | 131 | 160 | 146 | 74 | 2 | | |
| 2016.10. 1 | | 551 | 1 | 548 | 1 | 4 | 32 | 137 | 159 | 148 | 67 | 2 | | |
| 2017. 3.31. | | 564 | 1 | 561 | 1 | 4 | 32 | 140 | 160 | 149 | 75 | 2 | | |
| 2017.12.31. | | 577 | 1 | 574 | 1 | 4 | 33 | 143 | 164 | 149 | 80 | 2 | | |

나. 향후계획

주민의 의식 및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양적 확대 및 생활환경의 다변화, 전문화로 질적·양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관리체계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를 예측·조정함으로써 행정관리 능력배양에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5. 통계조사

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 통계상 77,733세대 181,016명(남 86,332 / 여 94,684)이던 것이 2017년 12월 31일 현재 79,788세대 181,725명(남 86,570 / 여 95,155)으로 세대수와 인구수 모두 증가 상태이다.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 769.86km² 중 수영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10.21km²로 전체 면적 비율 구성비의 1.3%에 해당된다. 인구밀도는 2016년도 당시 1km²당 17,729명이던 것이 2017년 12월 31일 현재 1km²당 17,799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 3,520,428명(한국인 3,470,653 / 외국인 49,653) 중 수영구 인구수는 181,725(한국인 179,996 / 외국인 1,729)명으로 전체인구 비율 구성비의 5.1%에 해당된다.

나. 사업체조사

2017. 12. 31. 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활동은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 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 수립, 학계·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고 표본 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개, 명]

| 구 분 | 합 계 | | | | 조 직 형 태 별 | | | | | | | |
|-----|--------|---------|--------|--------|-----------|--------|-------|--------|--------|-------|-------|-------|
| | 사업체수 | 종 사 자 수 | | | 개 인 | | 회사법인 | | 회사이외법인 | | 비 법 인 | |
| | | 계 | 남 | 여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총 계 | 13,296 | 54,444 | 28,456 | 25,988 | 11,496 | 27,659 | 1,076 | 17,274 | 269 | 8,024 | 455 | 1,487 |

◦ 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개, 명]

| 구 분 | 수 영 구 | | 남 천 1 동 | | 남 천 2 동 | | 수 영 동 | | 망 미 1 동 | |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총 계 | 13,296 | 54,444 | 2,112 | 10,645 | 625 | 3,243 | 1,572 | 5,818 | 1,496 | 4,311 |

| 망 미 2 동 | | 광 안 1 동 | | 광 안 2 동 | | 광 안 3 동 | | 광 안 4 동 | | 민 락 동 |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764 | 3,497 | 1,324 | 4,738 | 1,366 | 5,968 | 1,152 | 5,129 | 734 | 3,321 | 2,151 | 7,774 |

다. 통계연보 발간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주요통계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주민들을 위한 미래행정 수요예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계정보 공개 근거자료와 자치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척도 등으로 활용코자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 발간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20203호
- 기준시점 : 2016. 12. 31.(교육통계 2017. 4. 1.) 현재
- 대상기간 : 2016. 1. 1.~ 12.31.(2017년 3월 발간)
- 수록내용 : 연혁 등 16개 분야 145개 항목 수록

6. 감사행정

가. 기본방향

2017년은 “자율·책임·공감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부패 ZERO화를 도모하며, 자체 감사활동의 효율화·내실화로 공정성을 제고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였고, 2018년은 “구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i) 규정성과 제고를 위한 예방·지원감사 추진
- ii)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iii) 구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 iv) 현장중심의 정성을 다하는 민원처리로 구민만족 UP

나. 감사활동

2017년 자체감사 활동은 감사계획에 의거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8회, 공직기강 감찰 6회 등 총 16회, 건설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에 대한 계약심사 45회, 주요시책과 지시사항 처리 확인을 통한 수시 감찰활동 등 총 66회에 걸쳐 자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 자체 종합감사 (4개기관)

2017년 자체종합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남천1·2동, 수영동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사항해소, 예산집행사항,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처리실태와 주민생활지원(복지서비스) 관련 각종 지원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전반에 걸쳐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사前 「구민 공개감사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하는 한편 예방차원의 생산적 감사를 실시하여 17건의 수범사례와 9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2017년도 자체종합감사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감사 조치결과

[단위: 건, 천원, 명]

| 행 정 상 | | | 재 정 상 | | | | 신 분 상 | | | |
|-------|-----|-----|-------|-----|-----|-----|-------|-----|-----|-----|
| 계 | 시 정 | 주 의 | 계 | 추 징 | 회 수 | 기 타 | 계 | 징 계 | 훈 계 | 주 의 |
| 44 | 12 | 32 | - | - | - | - | 16 | - | 3 | 13 |

(2) 자체 부분감사 및 조사확인 등 감찰활동

대상기관의 업무 중 감사가 필요한 일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는 부분감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와 도급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시행착오 방지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시공감사 및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 및 규정 저해요인과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 시책점검·조사활동 등의 감사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7년은 국민들의 행정욕구에 부응하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통합조사관리 업무 처리실태 감사 등 8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및 구청장·부구청장 지시사항, 진정민원, 범죄통보, 공직비리 등에 대한 조사·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제도개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규정의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순찰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총 102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자체 순찰활동을 실시하였다.

부분감사 조치결과

[단위: 건, 천원, 명]

| 행 정 상 | | | 재 정 상 | | | | 신 분 상 | | | |
|-------|-----|-----|-------|-------|-----|-------|-------|-----|-----|-----|
| 계 | 시 정 | 주 의 | 계 | 추 징 | 회 수 | 기 타 | 계 | 징 계 | 훈 계 | 주 의 |
| 77 | 27 | 50 | 7,744 | 2,590 | 470 | 4,684 | 25 | - | 1 | 24 |

감찰 조치결과

[단위: 건, 천원, 명]

| 행 정 상 | | | 재 정 상 | | | | 신 분 상 | | | |
|-------|-----|-----|--------|--------|-----|-----|-------|-----|-----|-----|
| 계 | 시 정 | 주 의 | 계 | 추 징 | 회 수 | 기 타 | 계 | 징 계 | 훈 계 | 주 의 |
| 67 | 29 | 38 | 36,977 | 36,031 | - | 946 | 37 | - | 17 | 20 |

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한계를 극복하고 공직자 스스로 행정오류 및 비리를 예방하여 책임과 자율성,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였다.

중앙과 지방간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 총 1,881건의 상시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7,561천원의 재정상 조치 실적을 거두었으며, 106건의 자기진단과제 발굴 및 259건의 관리카드 작성을 바탕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개인별·부서별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라. 공직윤리 확립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청렴워크숍 개최, 외부강사 초빙 직원청렴 교육, 청렴문화 현장체험 교육, 청렴이행서약제 이행,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의 기본자세인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수영의 날, 청렴 및 행동강령 퀴즈, 1부서 1청렴시책 운영, 외부청렴도 자체측정,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마일리지제도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렴실천의 주민 확산과 참여를 위해 클린안내문 제작·배부, 새수영 구보에 청렴관련 기사를 지속 게재하였고 구 홈페이지 상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행동강령 위반자 신고센터, 공직자 클린 신고센터 등 3곳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 부조리 및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통한 투명한 구정 실현에 노력하였다.

마.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처리,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고지거부 허가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사항 심사, 재산등록의무자 제외 승인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재산 등록신고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재산등록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계 | 기 관 별 | | 공 개 여 부 | | 신 고 구 분 | |
|----|-------|-----|---------|-------|---------|-------|
| | 구 청 | 의 회 | 공 개 | 비 공 개 | 정기변동 | 의무면제등 |
| 90 | 82 | 8 | 9 | 81 | 59 | 31 |

7. 규제개혁 운영

가. 운영목적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지역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환경 개선과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나. 불합리한 규제정비

(1)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해당 조례 정비

법제처에서 발굴한 ‘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하는 우리 구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7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법제처 과제 수 (A) |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건수(B) | 선정 비율(C)= (B/A)×100 |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정비 완료건수(D) | 정비율(E) = (D/B)×100 | 점수계(F)= [(C×0.4) + (E×0.6)] |
|-----|--------------------|------------------------|---------------------------|-----------------------------|--------------------------|-----------------------------------|
| 수영구 | 30건 | 32건 | 100% | 30건 | 100% | 100% |

(2) 규제개혁 사례발굴 보고회 운영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의 방안을 내부에서부터 찾고자 규제 개혁 사례발굴 및 사례발표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규제개선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2017년 사례발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심사대상 : 총 25건
- 심사결과 : 총 7건 선정 및 시상

다. 규제개선 현장팀

우리 구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합리 또는 불편사항 등 규제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팀」을 운영하였다. 2017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팀」의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안건수 : 총 4건
- 추진실적

| 계 |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 기타 |
|---|----|------|-----|----|
| 4 | 2 | - | - | 2 |

- 기타 : 2건 중앙부처 개선 건의

라. 그 간 추진 사항

(1)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 2014. 4. 1. :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 구성(6급 1명, 7급 2명)
- 2014. 5.16.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정비(적극행정 면책제도 정착)
- 2014. 6.10. : 수영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제정·공포
- 2014. 7. 1. : 규제개혁담당 신설(6급 1명, 7급 1명)
- 2014.10.27. : 규제개혁담당 증원(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 2014~2015 :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실무교육 실시(2회)
- 2015. 7. 1. : 규제개혁계 인원 조정(6급 1명, 7급 1명)
- 2015.10. 5. : 수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 심사제도 정착)
- 2016. 5. 27. : 전 직원 대상 규제 및 대민 접점 공무원 맞춤형 직장교육 실시(1회)
- 2017. 6. 21. : 전 직원 대상 규제 및 대민 접점 공무원 맞춤형 직장교육 실시(1회)

(2)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

- 2014. 4.25. :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구 홈페이지 및 기획감사실 내)
- 2014. 5.13. : 규제개혁 개선사례 발굴 보고회 개최(연도별 상·하반기 각 1회)
- 2014. 6.18. : 수영구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구성·운영(연 1~2회)
- 2014~2015 : 자치법규 규제 전수조사 실시 및 정비(연도별 상반기 1회)
- 2015. 5. 8. : 수영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팀」 구성·운영(연 1회)
- 2016. 6. 15. : 수영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팀」 구성·운영(연 1회)
- 2017. 5. 17. : 수영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팀」 구성·운영(연 1회)

8. 구정발전 전략 및 장단기 정책사업 제안

정책개발계에서는 수영구의 현안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을 연구·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2017년도 주요정책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영강변 예술의거리 지정

망미2동 일원은 F1963 탄생 및 부산비엔날레 개최, B-Con 그라운드 조성, 수영강변 조각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존 사업을 활용·연계하여 수영강변 쉼터 조형작품~F1963 구간을(L=1.4km) 수영강변 예술의거리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9월에 지정하였다.

수영강변 산책로(갈매길), 망미단길이라는 새로운 카페거리 명소 형성 및 F1963의 전시, 공연, 먹거리 등 풍성한 콘텐츠의 활성화로 눈은 예술작품을, 발은 산책로로 눈과 발이 즐거운 예술의 거리로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좌수영성 역사전통의거리 지정

수영동 일원은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수영문화마을 조성, 수영팔도시장 및 야시장 등으로 도심재생의 활력이 불고 있는 지역으로 좌수영성 재창조 사업 가로환경개선구간을(L=1km) 좌수영성 역사전통의 거리로 2017년 9월에 지정하였다.

수영사적공원, 수영성 마을박물관, 선소거리길, 수영팔도시장 육성사업 등 역사와 구전전설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있는 역사전통의 거리로 조성하여 향후 지역 재생을 선도하고, 수영·망미권역을 아우르는 문화관광벨트가 완성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수영·망미권역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문화재보호구역과 공업지역의 쇠퇴 등으로 남천·광안권역 대비 지역활력이 저하되었던 수영·망미권역이 최근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심재생 및 폐공장의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의 전기를 마련중이다. 이에 체계적인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과 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수영·망미권역의 미래상 제시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전략별 사업 및 핵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전략별 사업 및 핵심프로젝트

| 전 략 | 사 업 명 | 사업비 | 사업기간 |
|-----------------------|----------------------------|----------|---------|
| 문전성시존 125.4억 | 수영팔도시장 저잣거리 프로젝트 | 3.2억 | 2019 |
| | 광안동 곱창거리 명소화 | 0.3억 | 2019 |
| | 망미오거리~수영역 역세권 보행거리 정비 | 15억 | '19~'20 |
| | 수영역~광안역간 지하도상가(세븐스퀘어)개장 | 106.9억 | '11~'17 |
| 좌수영 관아존 342.96억 | 경상좌수영 역사마을 조성 | 300억 | '20~'22 |
| |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한옥 리모델링 | 30억 | '20~'21 |
| |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 주민숙원사업 | - | 2018 |
| | 밤의 조명이 주는 선물, 수영성 빛의 거리 조성 | 12.96억 | 2018 |
| 문화예술 공장존 35.5억 | 준공업지역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 개최 | 1억 | 2019 |
| | 와이어공예 예술상상마을 조성 | 25억 | '19~'20 |
| | 추억의 솜바꼭질 골목 만들기 프로젝트 | 1.5억 | 2019 |
| | 정과정 가는길 조성 | 8억 | 2019 |
| 수영강 이음존 145억 | 수영강 보도교 프로젝트 | 120억 | '20~'22 |
| | 선소공원 및 전망대 조성 | 25억 | '19~'20 |
| 각양각색존 101.1억 | B-Con 그라운드 조성 | 90억 | '17~'19 |
| | 경상좌수영 테마거리 조성 | 10억 | 2019 |
| | 망미단길(카페공방거리) 활성화 | 0.1억 | 2019 |
| | 트롤리형 도심순환 투어버스 운행 | 1억 | 2019 |
| 핵 심 프로젝트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 250억 | '18~'20 |
| | 2021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공모 | 25억 | '19~'21 |
| 계 | | 1024.96억 | |

라. 「낭만가득 광안리」 조성추진계획 수립

수영구 대표 관광지 광안리해수욕장에 연인, 부부, 가족 간의 사랑고백 및 가족 애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 감동과 재미가 있는 낭만가득 광안리를 조성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광안리만의 공간브랜드화 및 수영구 대표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낭만가득 광안리」 조성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광안대교 야경과 프리포즈라는 콘텐츠를 연계하여 생활문화센터 내 프리포즈존을 조성 및 대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고 사랑과 낭만의 프리포즈 조형물을 설치하여, 광안리를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 또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 광안리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사업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정부 국가핵심기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위그선의 세계 최초 상용화 사업으로 광안리를 원점으로 하는 위그선(상용)운항사업 추진 상호협력을 위한 수영구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관광객 유치 및 고부가가치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우리구가 동·남해안 광역해상교통의 베이스캠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 새울 민원 빅데이터 분석

최근 3년간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데이터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혜안(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 및 민원신청 내역을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민원신청창구의 다변화로 민원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구는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시기에 원활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 발생률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